

제253회 영등포구의회  
2024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임헌호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6. 20.

행 정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경 과

의안 제343호로 2024년 5월 31일 임헌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과 관련하여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 외에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규정을 정비함.

## 3. 주요내용

당연직 고문에 비례대표 선출 구의원을 포함(안 제17조 제1항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 5. 17. ~ 5. 21.) 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주지 동(洞)의 “위원회 당연직 고문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
  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17조제1항(구성 등)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선거구에 속한 동(洞)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,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지 동(洞)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.
  
- 검토 결과
  - 「공직선거법」 제20조1)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선거하고, 비례대표자치구의원은 자치구 단위로 선거하고 있는바, 본 조례의 “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”을 당연직 고문으로 두고 있는 제17조제1항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만 한정되어 있어, 자치구 단위로 선거하는 비례대표자치구의원에 대한 사항은 미비한 실정임.
  
  -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은 비례대표자치구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

---

1) 제20조(선거구)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. ②비례대표시·도의원은 당해 시·도를 단위로 선거하며,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은 당해 자치구·시·군을 단위로 선거한다. ③지역구국회의원, 지역구지방의회의원(지역구시·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.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.

안 거주지 동(洞)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, 제14조<sup>2)</sup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<sup>3)</sup> 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자치사무임으로 상위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임.

2) 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, 시·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)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.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\*과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1]

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(제10조제1항 관련)

구 분	시·도 사무	시·군·자치구 사무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다. 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지원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, 시·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)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.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2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### 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1]

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(제10조제1항 관련)

구 분	시·도 사무	시·군·자치구 사무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. 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지원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

### 3

## 공직선거법

제20조(선거구)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. ②비례대표시·도 의원은 당해 시·도를 단위로 선거하며,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 의원은 당해 자치구·시·군을 단위로 선거한다. ③지역구국회의원, 지역구지방의회의원(지역구시·도 의원 및 지역구자치구·시·군 의원)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.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.

제253회 영등포구의회  
2024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6. 20.

행 정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경 과

의안 제350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여 자치  
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위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, 연수 등에 대한 지원(안 제7조)
- 나.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변경(안 제10조·별표 2)
- 다. 위원 연임 시 교육 이수 의무 규정 삭제(안 제1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4. 25. ~ 5. 16. / 21일간) 결과:

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(區) 자치회관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  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7조제9항(운영)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등 운영관련자에 대한 교육, 연수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함.
  - 안 제10조(사용료 등)에는 감면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.
  - 안 제17조(구성 등)에는 위원회 구성 시,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게 규정함.
  - 안 별표1에서는 수강액 상한액을 30,000원에서 35,000원으로 변경함
  - 안 별표2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의 감면비율을 전액 면제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함.

감 면 대 상	감면비율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	100%이내
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
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	
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·소녀가장	
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(막내가 18세 이하)	50%이내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
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	

### 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▲자치회관 운영관련자 교육, 연수 등 지원 근거 마련 ▲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변경 ▲주민자치위원 위촉 시, 위원선정위원회<sup>1)</sup> 심의 과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.
- 자치회관 수강료 상한액은 지난 '16.3.24. 이후 약 8년간 동결되어 있었기에 이번 일부개정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35,000원으로 상한액을 확대하는 것이며, 별표 2 관련 감면대상을 추가하고,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치회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-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으며, 감면비율

1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

제17조(구성 등) ④ 동장은 위원 선정 시 공정성,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동 여건에 따라 동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,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된다.

같은 경우 현재 영등포구 및 관악구<sup>2)</sup>를 제외하고는 23개 자치구에서 10%~100%의 감면비율을 형성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따라 감면대상별로 차등을 두어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- 한편, 현행 조례 및 개정안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위촉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,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위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위원 위촉 방식의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임. 아울러,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구(區)를 포함하여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에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확히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한 곳은 없기에 본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동장 위원 추천</div> <span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: 0 10px;">➔</span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구청장 위촉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동장 위원 추천</div> <span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: 0 10px;">➔</span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 text-align: center;">위원선정 위원회 심의</div> <span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: 0 10px;">➔</span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구청장 위촉</div>

- 아울러,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 12조 및 제13조<sup>3)</sup>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

2) 감면대상 전액면제 서울시 자치구: 영등포구, 관악구

3) 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, 시·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

에 속하는 것으로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음.

- 다만, 우리 위원회에 동일한 조례로 다른 내용이 담긴 두 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바, 본 조례안과 다른 한 건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<sup>4)</sup>을 제안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---

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- 4) 대안(代案):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또는 체계를 달리하여 수정할 경우 심사 중인 의안(원안)을 폐기하고 대신에 위원회의 안(새로운 안)을 제안하는 것임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, 시·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